

변론의 녹취(속기) 신청

사건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(서울고법 민사 제 2 부 나, 박홍우 부장판사)
원고 김명호,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415, 중앙하이츠빌 105 동 1504 호
(휴대폰:010-5590-8913)
피고 학교법인 성균관 대학, 서울 종로구 명륜동 3 가 53 이사장 권이혁

위 당사자간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청구 사건에 관하여,
법정 내에서의 거짓말들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목적 및 사실관계의 정확성 및 박
홍우 재판장의 재판진행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, 변론기일에서의 변론 전부를 녹취
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.

신청 사유

1. 대법원 재판 예규에(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(송일
81-7)(송일 83-2) 의하면,

제 목: 공포일 1981.11.16
제정 81.11.16. 송무심의 제 49 호
83.8. 1 송무심의 제 65 호
개정 88.5. 4 민사 제 556 호

“ 종래 각급법원에서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증인신문 등을 행한 후
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법관 또는 참여법원사무관 등의 기억 및
법정에서 기록한 간단한 메모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조서기재의 정확
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조서의 내용을 둘러싸고 조서작성자와 당사자 사이
에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증인 등이 억울하게 위증 등의 책임을 지게
되는 사례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
나가면서, 사실성에 있어서의 사실인정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법원
의 126 개 법정중 금년말까지 84 개 법정, 내년도에 나머지 법정에 각 녹
음장치를 설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법정녹음장치의 운용 및 관리에
관한 지침을 시달하니 각급법원에서는 동 지침에 의하여 법정녹음장치를
운용함으로써 조서작성사무의 개선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”





2. 민사소송법 제 159 조(변론의 속기와 녹음)
3. 2006년 4월 7일, 5월 12일, 5월 26일 자 변론조서가 실제 변론사실과 다름

2006. 7. 21

위 원 고 김명호

서울고등법원(민사 제 2부 나) 귀 중